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8822

제출연월일: 2025. 3.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려는 제도의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 거치면 되도록 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유효기간 연 장 여부 검토

제14조의 제목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을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증이"를 각각 "지정이"로, "인증신청"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를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으로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인증을"을 "제3항에 따라 우수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의"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해양수산 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를 거쳐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의"를 "지정의"로,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인증에"를 "지정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증의 변경 및 취소)"를 "(지정의 변경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내용"을 "지정내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으로, "그 인증"을 "그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인증표시"를 각각 "지정표시"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를 "우수 해양교육프로 그램의 지정 취소"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기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인증을"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로, "인증표시"를 "지정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본문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 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	제8조(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
정) ① (생 략)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	②
(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	5
육프로그램의 <u>인증기준</u> 적합	<u>지정기준</u>
여부 검토	
<u><신 설></u>	5의2. 제14조제6항에 따른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의 유
	효기간 연장 여부 검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14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
<u>•보급 및 인증 등)</u> ① (생 략)	·보급 및 우수 해양교육프로그
	<u>램의 지정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②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	
닌 자 중에서 해양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	
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u>인증이</u> 취소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 또는 <u>인증이</u> 취소된 날부터 2년간 <u>인증신청</u>을 할 수 없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후 단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인증표시</u>를 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u>인증</u>을 받지 아니한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에 따른 <u>인증표시</u>를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3항에 따른 <u>인증의</u> 유효기 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

<u>지정</u>
<u>지정이</u>
<u>지정이</u>
<u>지정신청</u>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이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지정표시----
- ⑤ ------ <u>우수</u>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 <u>지정표시</u>-------

로 하되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연장할 수 있다.

- ⑦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 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양교 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u>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u>
교육센터의 검토를 거쳐 그 지
정의 유효기간을
⑦ <u>지정의</u>
<u> 지정기준</u>
<u>지정에</u>
제15조 <u>(지정의 변경 및 취소)</u> ①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
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u>지정내용</u>
.
② <u>제14조제</u>
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u>그 지정</u>
<u>지정</u>
1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정-----

- 2. 제14조제3항에 따른 <u>인증기</u><u>준</u>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 3. 제14조제4항에 따른 <u>인증표</u><u>시</u>와 다르게 <u>인증표시</u>를 한 경우
- 4. 제1항을 위반하여 <u>해양교육</u>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15조제2항에 따른 <u>해양교</u> 육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